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49
----------	-------

발의연월일 : 2026. 5. 22.

발 의 자 : 주철현 · 문대림 · 조계원
박균택 · 윤준병 · 정준호
조인철 · 이성윤 · 이기현
손명수 · 전종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라 함)의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이하 “MLC”라 함)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권익 보호 등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대한민국은 해당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선원법」에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안 제61조의2)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안 제91조, 제92조) 등을 두고 있어,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이를 정비하

고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12조, 제159조의2),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108조), 타 법령 및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등).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1항 단서 중 “1주간에”를 “1일 6시간 이내, 1주간에 총”으로 한다.

제62조제4항 중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에게 그 선원”으로, “요청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2조제4항 중 “해양항만관청”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적합하면”을 “적합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장에 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호, 재해보상의 확인, 선내 안전보건 기준의 확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항 신고 시 승선원 명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선원 또는 선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
5.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조합 회장
6. 한국해운협회 등 그 밖에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 ⑪ (생략)

제144조(임원) ①·② (생략)

③ 이사장과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신설>

-----적합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44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비상
임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제15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 ① 해
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
하는 근로조건의 보호, 재해보
상의 확인, 선내 안전보건 기
준의 확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항
신고시 승선원 명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선원 또
는 선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

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

5.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조합 회장

6. 한국해운협회 등 그 밖에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